

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(앞쪽) 3일	
소유자	성 명 (법인명)						
	주 소 (전화번호)						
어선내역	어선의 명칭			어선번호			
	선 적 항			선 질			
	총 톤 수 톤			어업의 종류			
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중간검사의 종류							
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		년 월		일부터		년 월 일까지	
비 고							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기 위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
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어선의 항해,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. 어선검사증서 사본	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□ 중간검사 연기신청

-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·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□ 그 밖의 유의사항

-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,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